

20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

산업, 정보통신, 에너지 · 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위해 추진

▶ 문 의 : 지식경제부(1661-1357)

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11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『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』은 산업, 정보통신, 에너지 · 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의 R&D사업을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


1. 공통사항

■ 신청자격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
- 국 · 공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, 산업기술연구조합,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
- 한국디자인진흥원, 산업디자인전문회사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, 정보통신산업 진흥원
- 사업자단체,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사업자
-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
-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

20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



- 「민법」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
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

■ 신청방법

-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

■ 사업공고

-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, 지식경제R&D종합정보시스템(www.ernd.go.kr)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(문의처 참조)에 공고

■ 출연금 지원 기준

-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
-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,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
-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(예: 산업기술개발사업)
 -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
 -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: 총사업비의 50% 이내
 -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: 총사업비의 75% 이내
 -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
 -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: 총사업비의 75% 이내
 -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: 총사업비의 50% 이내

■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

-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
-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(예: 산업기술개발사업)
 -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: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
 - 그 밖의 경우 :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

■ 기술료

- 기술료율, 기술료 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

■ 지원제외

-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
 -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(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)
- 채무 불이행자(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) 등
 - ※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, 정부출연금 지원조건,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
 - ※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전담기관 및 지식경제R&D종합정보시스템(www.ernd.go.kr)에 공지함
 - ※ 지식경제부의 전체 시행사업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, 지식경제R&D종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(‘11년 1월 12일 서울 설명회 이후)

2. 사업별 지원 계획

(1)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
-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·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

〈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〉

- | |
|---|
| ① 신산업(4) : 로봇, 바이오·의료기기, 지식서비스/USN, 산업기술융합 |
| ② 주력산업(4) : 수송시스템, 산업소재, 제조기반, 플랜트엔지니어링 |
| ③ 에너지(3) : 에너지자원, 신·재생에너지, 전력, 원자력 |
| ④ 정보통신(5) : 전자정보디바이스, 정보통신미디어, 차세대통신네트워크, S/W·컴퓨팅, 디지털콘텐츠 |

가. 신산업 분야 (4개)

■ 지원규모 : 3,151억원 (신규 801억원, 계속 2,350억원)

- 로봇 : 699억원 (신규 287억원, 계속 412억원)
- 바이오·의료기기: 951억원 (신규 131억원, 계속 820억원)

- 지식서비스/USN: 556억원 (신규 100억원, 계속 456억원)
- 산업기술융합: 945억원 (신규 283억원, 계속 662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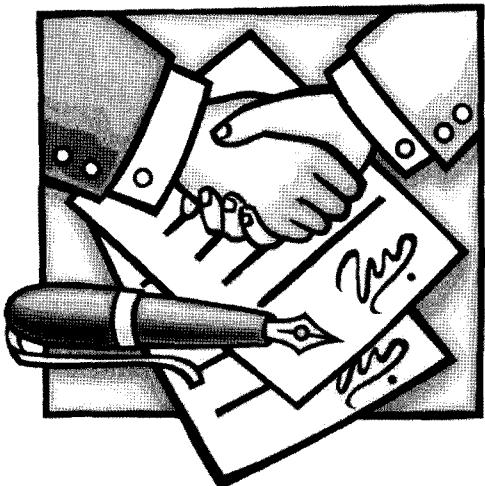
■ 지원내용

- 4대 신산업 분야의 핵심 · 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, 100대 전략제품기술 중심으로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3~7년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
- '10. 8 ~ '11. 3 : 연구기획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4 ~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 ~ 6 : 협약체결

나. 주력산업 분야 (4개)



■ 지원규모 : 2,814억원 (신규 937억원, 계속 1,877억원)

- 수송시스템 : 1,125억원 (신규 600억원, 계속 525억원)
- 산업소재 : 742억원 (신규 219억원, 계속 523억원)
- 제조기반 : 857억원 (신규 99억원, 계속 758억원)
- 플랜트엔지니어링: 90억원 (신규 19억원, 계속 71억원)

■ 지원내용

- 4대 주력산업 분야의 핵심 · 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, 100대 전략제품기술 중심으로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3~7년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
- '10. 8 ~ '11. 3 : 연구기획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4 ~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 ~ 6 : 협약체결

다. 정보통신 분야 (5개)

■ 지원규모 : 3,772억원 (신규 1,180억원, 계속 2,592억원)

- 전자정보디바이스 : 1,313억원 (신규 326억원, 계속 987억원)
- 정보통신미디어 : 406억원 (신규 70억원, 계속 336억원)
- 차세대통신네트워크 : 298억원 (신규 60억원, 계속 238억원)
- S/W · 컴퓨팅 : 1,517억원 (신규 696억원, 계속 821억원)
- 디지털콘텐츠 : 238억원 (신규 28억원, 계속 210억원)

■ 지원내용

- 5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 · 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,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3~5년 이내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
- '10. 8 ~ '11. 3 : 연구기획
- '11. 3 ~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4 ~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 ~ 6 : 협약체결



라. 에너지 분야 (4개)

■ 지원규모 : 6,615억원 (신규 1,974억원, 계속 4,641억원)

- 에너지 · 자원 : 2,153억원 (신규 533억원, 계속 1,620억원)
- 신 · 재생에너지 : 2,433억원 (신규 1,042억원, 계속 1,391억원)
- 전력 : 1,088억원 (신규 278억원, 계속 810억원)
- 원자력 : 941억원 (신규 121억원, 계속 820억원)

■ 지원내용

- 4대 에너지기술 분야의 핵심 · 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상시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3~7년 이내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 20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

■ 추진일정

- '10. 9 ~ '11. 3 : 연구기획
- '11. 4 : 사업공고
- '11. 5 ~ 6 : 접수 및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
(2)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
■ 사업개요

-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부품소재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핵심부품소재의 자립화로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■ 지원규모 : 1,760억원(신규 290억원, 계속 1,470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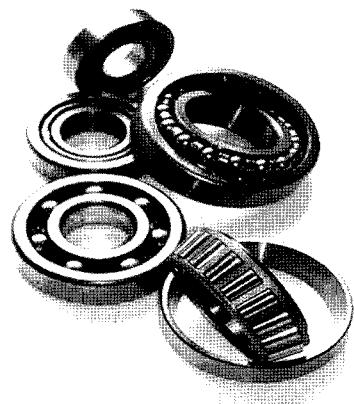
- 단독주관 521억원(신규 180억원), 공동주관 1,239억원(신규 110억원)

■ 지원내용

- 핵심 부품 소재의 수입대체 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에 대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
- 지원조건 : 과제 성격에 따라 연간 7~15억원 내외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
- '11. 3 ~ 4 : 사업공고
- '11. 4 ~ 5 : 접수
- '11. 5 ~ 6 : 기술성 평가(단독, 공동주관)
- '11. 8 : 사업성 평가(단독주관)
- '11. 7 ~ 9 : 협약체결


(3)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(주력 및 신산업)
■ 사업개요

-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여 산

업구조 고도화 달성

※ R&D 사업체계 개편에 따라 분야별 중소·중견기업 지원사업을 '신시장 창출' 프레임워크 내 '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'으로 통합 운영하며, 각 세부사업별 상세 개요 참조

■ 지원규모 : 1,614.9억원(신규과제 680.6억원, 계속과제 934.3억원)

※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 규모 등을 참조

■ 지원내용(공통사항)

- 지원대상 : 주관기관은 중소·중견기업이며,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. 단,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,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시 안내 예정임
- 지원기간 및 금액 :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

가.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(ATC)

■ 사업개요

-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

■ 지원규모 : 508억원(신규과제 170억원, 계속과제 338억원)

■ 지원내용

- 지원대상 : '10년 매출액 중 수출 비중(제조업 분야는 10% 이상이고,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)과 R&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
※ 글로벌 ATC사업(WATC) 신청자격은 세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
- 지원기간 :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이며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
- 지원금액 : 센터당 연간 5억원 이내(글로벌 ATC사업(WATC)은 연간 8억원 내외)
- 기술개발사업비의 50%까지 지원하고, 핵심연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

■ 추진일정

- '11. 2 ~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
나. 글로벌전문기술개발 - 주력산업 및 신산업(World-Class 300)

■ 사업개요

-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역량 보유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
- "World-Class 300"사업 : 글로벌 시장 진출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&D, 전문인력, 자금,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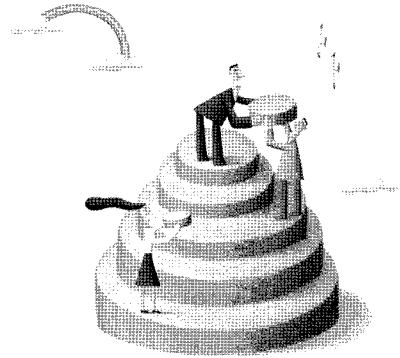
■ 지원규모 : 298억원 (신규 156억원, 계속 142억원)

■ 지원내용

- 총 개발기간 5년 이내, 연간 15억원 내외의 기술개발(R&D) 자금 지원

■ 추진일정

- '11. 1~3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3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4 :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


다. 디자인기술개발

■ 사업개요

-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의 Total Desig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

■ 지원규모 : 105억원(신규 90억원, 계속 15억원)

■ 지원내용

- 2년 이내(지원 세부내용은 전담기관이 별도 공고)